

의안번호	2203296
의 퇴 인	김용만의원
회 답 일	2024. 11.04.
추계번호	24D3322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억 9,200만원, 2030년 7억 1,6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34억 7,300만원(연평균 6억 9,5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의 설치 (안 제4조 등)	692	674	688	703	716	3,473	695

- 주: 1.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 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의 설치(안 제4조 등)는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
 3. 본 추계에서는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을 유사사례로 활용하여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왜곡행위가 정당화되지 못하도록 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4조(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업무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역사왜곡 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를 둔 위원회는 역사 왜곡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 등을 수행하고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X	역사왜곡행위 방지 등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시행 시 기존 유사 사업의 확대 여부 및 규모, 신규 사업 수행 여부 및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 계 곤란
2	안 제4조(헌법부정·역사 왜곡방지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업무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에 따라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회의 참석수당 등으로 추가재정소요 예상
 - 제정안은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를 상임위원 1명과 위원장 1명 및 위원 9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여 상임위원 1명에 대한 인건비, 비상임 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지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현황을 활용하여 위원회 운영을 위한 공무원 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은 위원회 업무에 역사 왜곡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 진정조사 등을 규정하여 이를 지원할 사무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인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현황을 활용하여 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처를 두는 것으로 가정
 - 2023년에 설치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단장 산하에 공직후보자의 사회분야 정보를 담당하는 인사정보 1담당관, 경제분야 정보를 담당하는 2담당관으로 구분되어 있고 20명의 인력으로 구성

- 이에 본 추계에서는 역사왜곡행위 등이 사회분야에 해당하므로 법무부 인사관리정보단 규모의 50%로 가정하여 10명의 인력을 구성하되 관련 부처의 전입 등을 고려하여 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¹⁾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본 추계에서는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상임위원 1명과 공무원 5명에 대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회의 참석수당으로 한정
 - (인건비) 제정안에 따라 상임위원 1명을 두고 공무원 5명을 증원하는 경우, 인건비는 2026년 6억 5,900만원, 2030년 6억 8,100만원으로 추정
 - 인건비는 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로 구성
 - 상임위원은 차관급이고, 직급별 공무원 수는 4급 1명, 5급 1명, 7급 1명, 9급 2명으로 가정²⁾
 - 국무총리비서실의 2024년 예산안 각목명세서에 근거하여 각 직급별 보수를 정하고 추계기간 동안 최근 3년(2022~2024년) 공무원임금 평균 상승률 1.9%를 적용

[표 2] 직급별 1인당 보수 추정: 2024~2030년

		(단위: 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국무총리 비서실	차관급	15,078	15,364	15,656	15,954	16,257	16,566	16,881
	4급	9,553	9,735	9,919	10,108	10,300	10,496	10,695
	5급	7,946	8,097	8,251	8,408	8,567	8,730	8,896
	7급	6,430	6,552	6,677	6,804	6,933	7,065	7,199
	9급	4,628	4,716	4,806	4,897	4,990	5,085	5,18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4.10)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소비자물가상승률(CPI)	3.6%	2.5%	2.1%	2.0%	2.0%	2.0%

2) 국무총리비서실의 2024년 예산안 각목명세서에서 본부 기준 직급별 인원의 비율 활용

[표 3] 상임위원 임명 및 공무원 증원에 따른 보수 추정: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헌법부정·역사왜곡 방지위원회	차관급(1명)	157	160	163	166	169
	4급(1명)	99	101	103	105	107
	5급(1명)	83	84	86	87	89
	7급(1명)	67	68	69	71	72
	9급(2명)	96	98	100	102	104
	합계	502	511	521	531	54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관부담금 요율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값³⁾을 적용하고, 기본경비 비율은 국무총리비서실의 2024년 예산안에 근거하여 12.2% 적용
- 자산취득비는 2026년 한 해에만 발생하고 1인당 501만원(국회예산정책처 전망값)

[표 4] 위원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추정: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헌법부정·역사 왜곡방지위원회	보수(a)	502	511	521	531	541
	기관부담금(=a×요율)	66	68	70	72	74
	기본경비(=a×12.2%)	61	62	64	65	66
	자산취득비	30	-	-	-	-
	합계	659	641	655	668	68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사무실 임차료)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실 임차료는 2026년 1,800만원, 2030년 2,000만원으로 추정
 - 사무실 임차료는 전체 인원 11명(=상임위원 1명 + 공무원 10명), 1인당 월평균 환산임대료(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 포함), 임차기간을 곱하여 산출
 - 1인당 월평균환산임대료는 2023년 기준 13만원⁴⁾이고,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표 5] 사무실 임차료 추정: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헌법부정·역사 왜곡방지위원회	전체 인원(a, 명)	11	11	11	11	11
	1인당 월평균환산임대료(b, 만원)	14	14	14	15	15
	임차료(=a×b×12개월, 백만원)	18	18	18	20	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2026년 13.2%, 2027년 13.3%, 2028년 13.4%, 2029년 13.5%, 2030년 13.6%

4)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23년도 연구용역보고서(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관한 조직설립, 운영 단가 현황 연구), 63쪽」의 임차청사 1인당 월평균 환산임대료 130.2천원/명을 참고하기로 함

- (회의 참석수당) 2026년부터 매년 1,500만원으로 추정
 - －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의 비상임위원 10명 중 50%가 민간위원이고, 연 12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 회의 참석수당은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면, 매년 1,500만원(=5명×12회×25만원)으로 추정
- 추계결과,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억 9,200만원, 2030년 7억 1,6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34억 7,3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6]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인건비	659	641	655	668	681	3,304
사무실 임차료	18	18	18	20	20	94
회의 참석수당	15	15	15	15	15	75
합계	692	674	688	703	716	3,47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하였고 유사사례를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